#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6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정태호·박홍배·이학영

한병도 · 김주영 · 김영환

이수진 · 송옥주 · 손명수

서영교·강준현·이연희

최기상・조 국・신영대

김태년 의원(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 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에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임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그의 우호적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는 이사회가신주를 발행하여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 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2조제2항 신설).
-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가액 등을 주주에게 통 지하도록 함(안 제342조제3항 신설).
- 다.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이사와 통모하여 신주를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함 (안 제342조제4항 신설).
- 라.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342조의2 신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회사는 처분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 처분예정일 및 처분방법을 그 처분예정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424조 및 제424조의2를 준용한다.

제342조의2 및 제342조의3을 각각 제342조의3 및 제342조의4로 하고, 제3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2조의2(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기주식 처분일로 부터 6월 내에 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86조부터 제189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및 제377조를 준용한다.
-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자기주식 처분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3월 이상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해당 주식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해당 주식의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서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해당 주식의 주주에게 회사가 해당 주식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여
- ⑤ 전항의 처분대가의 금액이 제3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 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 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야 하다.

⑥ 제4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ㆍ제2항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제342조 및 제 3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 단서 중 "제342조의2"를 "제342조의3"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2조의2"를 "제342조의3"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제342조의2"를 "제342조의3"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생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	
		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	
		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u>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u>	
		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	
		<u>할 수 있다.</u>	
<u> &lt;신 설&gt;</u>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	
		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	
		는 경우 회사는 처분하는 자기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	
		<u> 처분예정일 및 처분방법을 그</u>	
		처분예정일의 2주 전까지 주주	
		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u>한다.</u>	
<u> &lt;신 설&gt;</u>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	
		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	
		<u>는 경우에는 제424조 및 제424</u>	

<신 설>

조의2를 준용한다.

제342조의2(자기주식처분무효의소)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기주식 처분일로부터 6월 내에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 86조부터 제189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및 제3 77조를 준용한다.
-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 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자기주식 처분은 장래 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3월 이상으로 회사가 정 하는 기간내에 해당 주식의 주 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 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해당 주식의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 여서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 야 한다.
- ④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해당 주

식의 주주에게 회사가 해당 주 식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금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u>처분대가의 금액이</u> 제3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 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 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u>⑥</u> 제4항의 경우에는 제339조 와 제340조제1항·제2항을 준용 한다.

第342條의2(子會社에 의한 母會 社株式의 取得)(생략)

第342條의3(子會社에 의한 母會 社株式의 取得) (현행 제342조 의2와 같음)

得) (생략)

第342條의3(다른 會社의 株式取 第342條의4(다른 會社의 株式取 得) (현행 제342조의3과 같음)